



한국장애인고용공단

수신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 사업체
(경유)

제목 「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」 법적 의무 강화 안내 및 이행 현황 파악 협조 요청

1. 귀 사(기관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'18년 5월 29일부터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5조의2, 제86조,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등에 의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, 1시간 이상 「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」을 받아야 하며, 교육 미실시 또는 교육 실시에 대한 증빙자료 보관 의무(3년)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.
3. 교육은 □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실시하거나 □전문강사 초빙 또는 □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,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교육 안내문(붙임)과 공단 홈페이지(www.kead.or.kr)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메뉴를 통해 확인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(☎1588-151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잘못된 안내를 하고 있는 허위 교육 업체 주의 요망
4. 또한 귀 사(기관)의 교육 의무 이행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 지원에 참고하고자 하오니, 붙임 2의 서식을 작성하여 '18.10.5(금)까지 공단 이메일(bon3@kead.or.kr) 또는 팩스 (050-3470-0022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미제출 시 향후 이행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붙임 1.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문 1부.
2. 교육 의무 이행 현황 제출 서식 1부. 끝.

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



★대리 김내영 팀장 박주원 홍보협력실장 09/20 임미화

협조자

시행 인식개선팀-390 (2018.09.20.) 접수 ()
우 136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 <http://www.kead.or.kr>
전화 1588-1519 /전송 050-3470-0022 / bon3@kead.or.kr / 공개